

## 캐나다의 언어 정책

### - 퀘벡주의 언어 정책을 중심으로\*

이현주

인천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 1. 들어가며: 캐나다 대(對) 퀘벡

불균등하고 이질적인 언어 활동을 하는 언중에게 균질적이고 규범적인 언어 기준(철자법, 문법, 어휘 목록 등)을 제공하는 것이나 혹은 정부 차원에서 언어의 사회적 사용을 변화시키려는 숙고된 시도들을 언어 정책이라고 정의 한다면, 캐나다의 정책은 모범적인 사례라 보기 어렵다. 연방 정부가 표방한 이중 언어주의(bilingualism)는 법안 채택 당시 많은 주 정부들의 호응을 얻었으나 실제로는 뉴브런즈윅주 한 군데에서만 채택이 되었고, 퀘벡주의 단일언어주의(unilingualism)는 끊임없이 연방 정부와 마찰을 일으켰으며, 이미 90년대부터 캐나다 국민 중 이중 언어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3배가량 많이 나타났다.<sup>1)</sup> 그러나 보다 넓은 시각에서, 국가 또는 언어 공동체가 국가 정신을 수립하거나 또는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발견해 가는 데에 언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끔 하는 제반 조치가

\* 이 글은 2007년 <새국어생활> 봄 호에 발표한 논문 “외국 사례를 통해서 본 전문 용어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전, 심화시킨 것이다.

1) 1992년 조사에 따르면, 이중 언어 정책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2%, 성공으로 보는 사람이 26%였다.(<http://www.axl.cefan.ulaval.ca/amnord/cndpollng.htm>)

언어 정책이라고 본다면, 캐나다와 퀘벡의 사례는 흥미롭다. 사회 속에서의 언어 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언어 생태계를 관리, 정비하고자 하는 캐나다의 연방 정부와 지역 공동체 고유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프랑스어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려는 퀘벡 정부는 서로 촉매제 이자 반응체의 역할을 하며 각기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퀘벡의 언어 정책이 어떻게 태동하고 정착할 수 있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정책 실행을 위한 법제 마련에서부터 프랑스어 기구의 활동 방향 및 그 특이성을 중심으로 정리한 후, 연방 정부 언어 정책과의 연관성 또는 대립 전략을 살펴보겠다.

## 2. 퀘벡의 언어 정책

1977년 8월 26일 공포된 「프랑스어 헌장(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과 여기에서 드러난 퀘벡 언어 정책의 합법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이중적이다. 캐나다의 사회 언어학자 오제(Auger, P.)는 「프랑스어 헌장」을 ‘언어 정비와 관련하여 정부가 통과시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법안’이라고 평가하지만,<sup>2)</sup> 영어권의 학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캐나다의 헌장을 위반한 법안으로 보며 비판의 날을 세운다.<sup>3)</sup>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프랑스어의 쇠퇴를 겪은 퀘벡의 보호주의자들에게 프랑스어의 수호는 민족·문화적 의미를 띤다. 또한 프랑스어 수호는 정체성, 단결성, 일치성의 요청이며, 소수

---

2) 오제[Auger(1984), 10쪽].

3) 「프랑스어 헌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항상 인용되는 법은 연방 정부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캐나다 헌장(Charte canadienne des droits et libertés)」(이하 ‘캐나다 헌장’)이다. 이 헌장이 1982년 공포된 후에 퀘벡에 적용이 요구되었으나 퀘벡은 「캐나다 헌장」의 제1조, 즉 “[...]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적 틀 안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 정당성이 판별되는 경우에는 본 법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퀘벡에서 프랑스어의 배타적 지위가 보장받을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에 대한 사회적 정의의 요구이다. 「프랑스어 현장」에서 퀘벡의 유일한 공식어는 프랑스어라고 천명했는데, 이는 캐나다의 연방 정부가 국가 정체성을 ‘이중 언어주의’로 선포하고 언어, 인종, 문화의 다양성을 국가 이름으로 삼고자 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프랑스어를 소수어로 보고 이의 보호를 주장하지만, 퀘벡 내의 소수 언어인 영어에 대해서는 공식어로서의 지위를 배제하고 있어 역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퀘벡과 연방 정부 간의 이러한 가치 대립적 상황은 벨기에, 스위스와 같은 다른 이중 언어 또는 다언어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아래에서는 캐나다 언어 정책이 가진 특수성의 배경과 퀘벡 언어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자 한다.

## 2.1. 퀘벡 언어 정책의 배경 및 역사

퀘벡 언어 정책에서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19세기에 영어권 사업가들의 유입으로 산업화가 시작되고 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의 주요 부문, 기업의 임원은 영국인이 주를 이루었고, 이후 미국인 또는 캐나다의 영어권 사람들이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고용된 프랑스인들은 조직의 말단에 들어가거나 잡일에 투입되었을 뿐이며 그나마도 영어로 소통해야 했으므로 프랑스어는 점차 집안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끼리만 소통하는<sup>4)</sup> 사적 영역의 단편적인 도구가 되었다.

퀘벡 주민들의 손으로 퀘벡의 경제와 운명을 개척하자는 기시적인 움직임은 196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이른바 ‘조용한 혁명(Révolution tranquille)’과 함께 퀘벡의 후진적 상황을 극복하고, 영어 및 영미권이 모든 준거가 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sup>5)</sup> 퀘벡의 언어학자인 코르베이유(Corbeil, J.C.)의 용어에 따르면 ‘순응의 이데올로기’ 단계에서 ‘극복의

4) 모래[Maurais(1993), 113쪽].

5) 코르베이유[Corbeil(1975), 13쪽].

‘이데올로기’ 단계에 이른 것이다. 1961년 퀘벡 의회는 ‘프랑스어청(Office de la langue Française, OLF)’을 수립한다. 그 당시 역할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향후 10년간 프랑스어의 지위와 가치를 회복하는 모든 주요 조치들을 세우는 데 물꼬를 튼 것이었다.

프랑스어 수호 정책의 시발점이 된, 이른바 ‘장드롱 보고서(Gendron Report)’(1973)는 1968년에서 1973년까지 5년간 수행된 ‘퀘벡의 프랑스어와 언어권을 위한 조사 위원회(Commission d’enquête sur la langue française et des droits linguistiques au Québec)’의 결과 보고서이다.<sup>6)</sup> 이 위원회의 목적은 퀘벡 주민 다수의 언어인 프랑스어 화자와 소수어인 영어 화자들의 언어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이 위원회의 결론은 프랑스어를 퀘벡의 유일한 ‘공식어(official language)’로 하 고, 프랑스어와 영어를 퀘벡의 ‘국어(national languages)’로 인정한다는 것이다.<sup>7)</sup> 이 보고서는 프랑스어가 소멸의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 시장 및 교육 환경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며, 퀘벡에서 조차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는 프랑스어 화자들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학교 교육에서도 영어 학교를 선호하는 등 다양한 사회 부문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sup>8)</sup> 이를 통해서 퀘벡 정부는 고유하고도 강력한 언어 수호 정책, 즉 단일 언어주의(unilingualism)의 근간을 마련한다. 이듬해인 1974년 「공식어법」

6) 위원장이었던 언어학 교수 장드롱(Gendron, J.D.)의 이름을 따서 ‘장드롱 보고서’라고도 불리는 이 결과 보고서는 퀘벡 언어 상황에 대한 방대한 설문과 진단, 건의로 구성된 총 3권의 문서이다. 1권 ‘직업어’(379쪽), 2권 ‘언어권’(474쪽), 3권 ‘민족 집단’(570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7) 이중 언어 국가나 다언어 국가의 언어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로 ‘national language(국어)’라는 용어 가 종종 등장한다. 이때 ‘national language’란 민족, 인종 또는 출발지였던 근원 국가의 지역적, 문화적 정체성을 품고 있는 언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우리말 사전에 등장하는 ‘국어’의 의미, 즉 ‘한 나라의 국민이 사용하는 말’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각 주 정부가 입법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 국가(state)이며 이중 언어학자들은 프랑스어권의 지역과 영어권 지역을 서로 다른 두 나라(nation)로 보기도 한다.

8) 장드롱의 조사 이전에도 1963년 로랑도-덩顿(Laurendeau-Dunton)의 이중 언어주의에 대한 조사 위원회와 1968년 퀘벡 기업들에서의 언어 권리와 언어 상황에 대한 조사 등 본 지역에 대한 축적된 사례들이 있었다.

(22호 법)이 통과된다. 「공식어법」의 성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후 등장한 「프랑스어 현장」(101호 법)의 모태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 2.2. 프랑스어 현장과 프랑스어청(OLF)

魁北克에서 강력한 언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언어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강화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아래의 법령을 통해魁北克의 언어 관련 법안과 언어 정책 방향의 변천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채택 연도	법규명
1965년	「魁北克 프랑스어 말과 글에 대한 규범(Norme du français écrit et parlé au Québec)」(프랑스어청)
1969년	「魁北克 프랑스어 진흥을 위한 법률(Loi pour promouvoir la langue française au Québec)」(63호 법)
1974년	「공식어법(Loi sur la langue officielle)」(22호 법)
1977년	「프랑스어 현장(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101호 법)

1961년魁北克 의회법으로 ‘프랑스어청’이 설립되고魁北克에서 프랑스어의 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위임받았다. 프랑스어청은 1965년 “魁北克 프랑스어 말 글에 대한 규범”을 공표하고, 이와 동시에 여러 언어학자들은 ‘잘못된 예(이렇게 말하지 마시오.)’, ‘옳은 예(이렇게 말하시오.)’류의 간행물을 펼쳐 냈으며 ‘바른말 운동’을 계속해서 벌인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관 주도의 하향식 처방으로써 어휘의 공백이나 언어적 불안감을 더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1969년 공식어를 진흥시키는 구체적 법안(63호 법)이 통과되면서 전환의 계기를 맞는데, 이때부터 프랑스어청은 정치적 기구로서 프랑스어를 직

언어(langue de travail)로 정착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인 언어 정책과 전문용어 정비 작업에 뛰어들고자 하였다. ‘기업의 프랑스어화’라는 개념이 이때 생겨난다. 한정된 분야 안에서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선 관찰하고, 어느 지점에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꼼꼼한 전략 짜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63호 법은 프랑스어와 영어를 공식어로 규정하고 학교 교육에 있어 프랑스어와 영어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퀘벡의 영어권 국민과 프랑스어권 국민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법이 되었다.<sup>9)</sup>

이에 1974년 프랑스어가 퀘벡의 유일한 공식어임을 최초로 천명한 「공식 어법」(22호 법)이 등장한다.<sup>10)</sup> 「공식어법」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프랑스어 현장」의 모체가 되는 법안으로, 프랑스어가 퀘벡의 공공 및 사립 부문의 직업 어이자 광고 및 소비재에 쓰이는 언어,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되도록 다양한 조치들을 세워 놓았다. 이 법안에서 공식어로서 프랑스어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공공 부문이 제시되는데 그 분야는 아래와 같다.<sup>11)</sup>

부문	내용 및 특징
사법 언어	법이나 판결이 모호한 경우, 프랑스어 문서를 우선으로 한다.
행정 언어	모든 공식 문서는 공식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공공 목적의 기업 및 직업의 언어	모든 공기업의 서비스는 공식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상업/경영 분야의 언어	상업 광고에는 모두 공식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직업어	정부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어화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교육 언어	영어 공립 학교는 ‘충분한’ 영어 능력이 있는 어린이에게만 입학을 허가한다.

9) 그 결과 이 법안을 주도한 베르트랑 정부와 국가 연합(Union nationale)당은 퀘벡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후 퀘벡당(Parti Québec)이 정권을 잡게 된다.

10) 이 법안은 「프랑스어 현장」의 입법 후 폐기된다.

11) 22호 법 전문: <http://www.axl.cefan.ulaval.ca/amnord/quebec-loi-1974.htm>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문용어 위원회(Commission de terminologie)’와 ‘프랑스어 관리소(Régie de la langue française)’를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전 산업의 기업들과 각 정부 부처가 부문별로 전문용어를 정비하고 프랑스어 관련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며 정부를 자문하고 프랑스어화 증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식어법」은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였고, 이후 1977년에 ‘101호 법’이라 불리는 「프랑스어 현장」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실질적이고 영향력 있는, 그리고 또한 공식적이고 강제적인 언어 정책들이 실행된다. 「프랑스어 현장」은 언어의 차원만큼이나 정치적 상황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법안이기도 하다. 퀘벡당(Parti Québec)이 정권을 잡은 후 지역 문화와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80.6%라는 압도적인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채택된 본 법안은 22호 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상업 부문, 특히 외부 광고, 홍보물에서 프랑스어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계속 유지하였다.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영어권 화자들 및 사기업들의 큰 반발을 샀으며 법안이 발의된 이후 38,000명가량의 영어권 주민이 퀘벡을 이탈하는 탈주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후 퀘벡 법원과 캐나다 연방 법원이 줄지어 「프랑스어 현장」의 해당 조항이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리자 1988년 퀘벡시는 이를 받아들여 법문을 소폭 수정한다. 즉, 프랑스어가 충분히 우세한 언어 환경이라면 기업 외부의 광고는 프랑스어로 하되, 기업 내부에서는 다른 언어들을 병행해서 기입할 수 있게 하였다.<sup>12)</sup> 프랑스어권에서는 이 결정을 연방 법원과 타협한 것으로 보고 비판한 반면, 영어권은 「캐나다 현장」의 특례 조항(제33조)을 이용하여 거의 표면적으로만 수정했다고 비난했다.

---

12) 당시의 퀘벡에서는 시민들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정체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퀘벡 정신이기도 한 「프랑스어 현장」의 수정으로 말미암아 퀘벡 정부 부처 장관 3명이 사임하기도 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광고 관련 법 조항 등으로 인한 사회, 정치, 법적 쟁점의 한가운데 있었던 「프랑스어 헌장」은 사실 프랑스어를 모든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표준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언어로 규정하여 프랑스어의 지위를 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언어법이다. 그런데 22호 법과 101호 법 모두 프랑스어가 케베의 공식어임을 천명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프랑스어의 지위에 대한 문제보다 정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어의 추상적인 가치를 선포하는 것보다 실제 화자들의 직업 생활과 소비 생활에 능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될 프랑스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프랑스어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케베의 언어 정책은 언어 전반이 아닌 전문용어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01호 법은 공공 기관, 경제생활(직업 부문), 교육 부문의 세 영역을 필수적인 프랑스어 단일 언어 정책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사실 생활 전 분야에 해당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전문어와 일반어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여 전문가들이 사용하던 용어가 일상에 침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프랑스어화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던 분야가 식품 분야이기에 그 파급 효과는 더 컸다고 하겠다.

프랑스어 수호 정책을 실제 운영할 기관으로 1973년에 프랑스어청 내부에 ‘전문용어 위원회(CTOLF)’를 설치하였으나 본격적인 활동은 101호 법의 발효 이후인 1978년부터 이루어졌다. 「프랑스어 헌장」에서 프랑스어청과 각 행정 부처 내부에 ‘전문용어 위원회’를 두고 부처 관리자 및 전문가들 스스로 용어를 표준화하도록 하였고, 극도로 정확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전문용어의 용례를 공시하게 하였다. 상기 법 제100조는 프랑스어청이 ‘언어와 전문용어의 연구 조사에 대한 케베주의 모든 정치적 행위를 정의하고 지도하며, 프랑스어가 빠른 시간 내에 소통의 언어, 직업어이자 상업·비즈니스의 언어가 되게끔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어청 전문용어 위원회는 첫 6년간 49회의 모임과 10,000건이 넘는 제안서를 프랑스어청에

올렸으며 현재는 《전문용어대사전(Le grand dictionnaire terminologique)》[구(舊) 《퀘벡용어은행(Banque de terminologie du Québec)》]<sup>13)</sup>을 온라인상에 운영하여 300개 이상의 전문 분야를 아우르는 300만 개 이상의 전문용어(프랑스어-영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2.3. 기업의 프랑스어화

가장 강력한 전문용어 정비 사업은 기업 단위에서 이루어졌다. 프랑스어 현장은 제136조에 50명 이상의 직원을 갖는 모든 단체는 ‘프랑스어청에서 발행한 프랑스어증을 소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강제된 것이었으며, 제141조에 ‘직업어로써 그리고 기업 내의 모든 의사소통의 언어로써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하며, 기업 내부의 모든 문서, 상품 안내서나 설명서, 고객이나 납품 업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모든 소통의 수단 및 광고에서 프랑스어 용어를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방대한 사업의 책임자 또한 현장은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100명 또는 그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는 기업은 적어도 6명으로 구성된 프랑스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제146조) 이 중 적어도 1/3은 노동자들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프랑스어 위원회는 용어를 프랑스어화하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그것이 적용되는 것을 감찰하며 기업 내 프랑스어의 지위가 보장되도록 힘쓰는 임무를 위임받았다.(제150조) 그래서 프랑스어 위원회는 기업 내부뿐 아니라 프랑스어청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정비된 용어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직업인들이 공유하게끔 배포되었다. 이는 해당 법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사상 초유의 전문용어에 대한 방대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일단 용어 정비가 이루어지고 프랑스어증을 받은 이후에는 더

---

13) 《전문용어대사전》 누리집: <http://www.granddictionnaire.com/>

이상 용어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3년 프랑스어 용어의 질과 사용의 지속성을 촉구하는 법 조항이 더욱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프랑스어증은 용어 작업의 마침표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기업의 프랑스어 진흥 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1989년 발표되기도 하였다. 기업이나 노동 단체 단위당 연간 최대 미화 25,000달러를 제공하고 기업이나 노동 단체의 연합체면 두 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공하였다.

### 3. 퀘벡 언어 정책의 특징과 언어 정비의 실제

퀘벡 언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 정책 내에 전문용어 정비 과정을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전문용어 정비를 통해 언어 정비를 일궈 냈다는 점이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물러났던 프랑스어를 공적인 사용으로 끌어내기 위해 퀘벡주 공식어를 프랑스어로 친명하고 법제화하였으며, 프랑스어로 말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즉, 프랑스어를 기업과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만들기 위해 설립한 것이 프랑스어청 ‘전문용어 위원회’인 것이다. 기존의 영어, 그리고 영어화된 프랑스어를 대체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전문용어에 대한 강조로 나타난 것이다. 어휘적 결손은 전문, 기술 용어에서 두드러졌으며, 그러므로 가장 대규모의 정비 작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일어난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퀘벡의 언어 정책은 전문용어 정비이자 어휘의 근대화 정책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우선, 전문용어 재정 작업과 방법론의 혁신으로 이어졌다. 전문용어를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보유한 어휘 집합으로 보지 않고, 모든 전문성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직업어’로 간주하였다. 이는 전문용어의 가장 넓은 의미로서 고도의 학술 용어부터 직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어휘 및 표현, 일상생활이나 살림살이에서 부딪칠 수 있는 전문성을 띤 모든 어휘를 총망라한다. 그렇기에 기존의 사전이나 용어집, 술어집, 전문적 텍스트만이 아니라, 현장으로 직접 가서 어휘를 채집하는 사회 언어학적 방법론을 택한다. 케벡주의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언어 정비 방법은 이후 다른 국가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프랑스 용어 위원회의 용어 정비 작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프랑스의 언어학자 강비에(Y. Gambier)는 ‘사회 언어학’과 ‘전문용어학’이라는 두 용어를 합쳐서 ‘사회 용어학(socio-terminologie)’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으며, 길베르(L. Guilbert)는 언어 규범화를 일컫는 단어 ‘normalisation’과 대비시켜 norme(규범)와 maison(집, 터전)이 합해진 ‘normaison’이라는 용어를 제시했다. ‘normalisation’이 위로부터 제시하는 표준 규격을 일컫는다면, ‘normaison’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서 비롯된 규범을 의미한다. 이렇듯 케벡주의 전문용어 정비는 케벡주 자체의 언어 정비를 이룩했을 뿐 아니라 언어 정비와 표준화라는 개념에 영향을 주고 용어학에도 새로운 학술적 전망을 밝혀 주었다.<sup>14)</sup>

한편, 캐나다 내 영어권 지역의 전문용어 관련 작업은 정비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 주는데, 통일화·규범화 경향과는 달리, 번역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다국적 기구나 제도적으로 이중 언어 또는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용어 작업의 경향이며, 서로 다른 언어의 대응 용어 목록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4) 프랑스어청은 ‘프랑코포니 전문용어 국제 네트워크(RINT)’ 설립(1986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 4. 나오며: 캐나다 언어 정책의 쟁점 및 시사점

한 나라의 언어 정책이나 법령들은 상호 관련하여 국가 고유의 언어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는 연방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중 언어 정책과 프랑스어권 지역, 특히 퀘벡주의 프랑스어 보호 정책이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오랜 시간 양립하기 어려운 법·정치·사회·문화적 충돌 양상을 보였다.

사실 오랫동안 캐나다 연방 정부는 언어 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1867년의 「영국령 북미 협정」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의회와 연방 사법부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나 자국 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나 퀘벡 외 지역에서 급속도로 쇠퇴하는 프랑스어에 대한 관심은 부재했다. 1890년 매니토바주에서 공식적으로 공공 기관에서의 프랑스어 사용을 폐지하고 프랑스어 학교 역시 폐쇄한 후에 연이어서 온타리오주와 뉴브런즈윅주 등이 프랑스어 공공 교육 기관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는 영어권의 확대와 인구 증가, 영어로의 언어 동화 현상(assimilation), 즉 공고해지는 영어 영토주의(territorialism)에 대한 지방 정부들의 대응을 지켜보기만 한 것이다.<sup>15)</sup>

1960년대에 들어선 후 연방 정부는 입장을 선회하여 적극적인 언어 정책을 선보이는데, 이는 퀘벡주의 강경한 언어 태도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아래에 열거한 일련의 언어 정책들을 보면 연방 정부의 언어법이 퀘벡 언어법의 등장에 영향을 받았거나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15) 한편, '아메리카에서의 프랑스 생활 자문회(Conseil de la vie française en Amérique)'는 연방 정부의 간행물에 영어, 프랑스어 병용과 서부 캐나다에서의 프랑스어 보존, 프랑스어 라디오 지원, 넓게는 정부의 이중 언어 정책에 대한 천명과 실행을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했다.

채택 연도	정부	법규명
1969년	魁벡	「魁벡 프랑스어 진흥을 위한 법률(Loi pour promouvoir la langue française au Québec)」(63호 법)
1969년	캐나다	「공식어들에 대한 법률(Loi sur les langues officielles)」
1974년	魁벡	「공식어법(Loi sur la langue officielle)」(22호 법)
1977년	魁벡	「프랑스어 헌장(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101호 법)
1982년	캐나다	「권리와 자유에 대한 캐나다 헌장(Charte canadienne des droits et libertés)」
1988년	캐나다	「공식어들에 대한 법률(Loi sur les langues officielles)」
		「캐나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법률(Loi sur multiculturalisme canadien)」

특히 1977년의 「프랑스어 헌장」(魁벡)과 1982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캐나다 헌장」(연방 정부)은 대립, 대치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부각된다. 전자가 국지적 보호 규범인 데 비해 후자는 보편 규범이고, 전자가 민족적, 집단적 속지주의에 의거한 언어 권리를 말하는 반면 후자는 개인 차원의 범지역적 언어권을 말하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언어 정책에 대한 많은 글들이 퀘벡과 캐나다 정부 간의 깊은 골, 합의의 부재와 모순 타결의 난제 등을 꼬집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본 이러한 법령의 흐름에 따라 캐나다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진지하게 언어법을 탐구하고 모순된 여러 가치들을 경영하는 방안을 터득해 가고 있다.

연방 정부의 언어 정책과 퀘벡의 언어 정책은 ‘평등’이라는 개념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캐나다 연방 정부로서는 유입 인구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프랑스어가 통합의 언어가 되어야 하고 새 유입 인구가 프랑스어와 영어를 선택함에 있어 적법하고 완전히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두 언어의 동등함을 표방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미 프랑스어와 영어의 지위가 불평등하고 사회 언어학적 지평이 서로 다

른 상황에서 이 두 언어의 가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일 것이다. 언어 다양성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언어의 복수성 자체가 아니라 그 사회, 정치적인 가치화 과정과 그 인식에 놓여 있다. 언어 다양성은 늘 존재해 왔으나 이를 동질화하거나 권력화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한 정황과 요인에 의해 쉴 새 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케벡의 프랑스어 정책과 같이 전문용어의 정비에 힘쓰는 것은 언어의 미래, 언어의 진흥과 풍부화에 직결되어 사회 언어학적으로 화자들의 언어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장해 주는 일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욱기(2005), “캐나다의 언어정책 분석”, 『프랑스문화연구』 11, 한국 프랑스문화학회, 71~99쪽.
- 김종명(2007), “불어권 캐나다 퀘벡주의 불어수호 언어정책 연구”, 『한국 프랑스학논집』 59, 한국프랑스학회, 1~36쪽.
- 이현주(2007), “외국 사례를 통해서 본 전문 용어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새국어생활』 17-1, 국립국어원, 69~88쪽.
- 전성기(1993), “불어학 : 캐나다 퀘벡의 불어 사용 상황과 언어 정책”, 『불어 불문학연구』 28, 한국불어불문학회, 493~506쪽.
- 한민주(2004), “캐나다 퀘벡의 언어정책”, 『불어불문학연구』 59, 한국불어 불문학회, 355~376쪽.
- Angéline Martel(1999), “La politique linguistique canadienne et québécoise. Entre stratégies de pouvoir et identités”, 『Les enjeux de la coexistence linguistique』 2-2, 37~64쪽.
- Auger, P.(1984), “La commission de terminologie de l'Office de la langue française et la normalisation terminologique”, 『Terminogramme』 26-27, 9~12쪽.
- Bernard Spolsky(2012), 『The Cambridge Handbook of Language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 C. Corbeil(1975), 『L'aménagement linguistique du Québec』, Officiel du Québec.
- Jacques Maurais(1986), “L'aménagement linguistique au Québec”, 『Langages』 21-83, 101~110쪽.
- Jacques Maurais(1993), “Terminology and language planning”, 『Terminology. Applications in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H. B. Sonneveld & K.L. Loen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Jean Dansereau(1999), “La politique linguistique du Québec. Vérités et mensonges”, 『Les enjeux de la coexistence linguistique』 2-2, 65~82쪽.